

2019년도 건설공사 품질교육

건설공사 품질관련 정책 소개

[건설기술진흥법을 중심으로]

2019. 2.

익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건 설 안 전 국

품질관리계획



-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 연면적 **3만 m^2** 이상 건축물
- 건설공사 계약사항에 포함

품질시행계획



- 총공사비 **5억원** 이상 **토목**공사
- 연면적 **660 m^2** 이상 건축공사
- 총공사비 **2억원** 이상 **전문**공사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절차



* 현장의 부지 정리, 가설사무소 설치 등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음

품질관리비

발주자는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함[법 제56조]

품질관리비는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함[규칙 제53조]

품질시험비

-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장비 손료, 시험기구 검 · 교정비 등

품질관리활동비

- 품질관리자 인건비
- 품질 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비용
- 품질 관련 교육 · 훈련비
- 품질검사비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교육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

| 교육 · 훈련 이수시기 | 교육 · 훈련 시간 |
|---|----------------------------------|
|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 하려는 경우 | 기본교육 : 35시간 이상 전문교육 : 35시간 이상 |
| 현재 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 전문교육 : 35시간 이상 |
| 품질관리업무 수행한 기간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 전문교육 : 35시간 이상 |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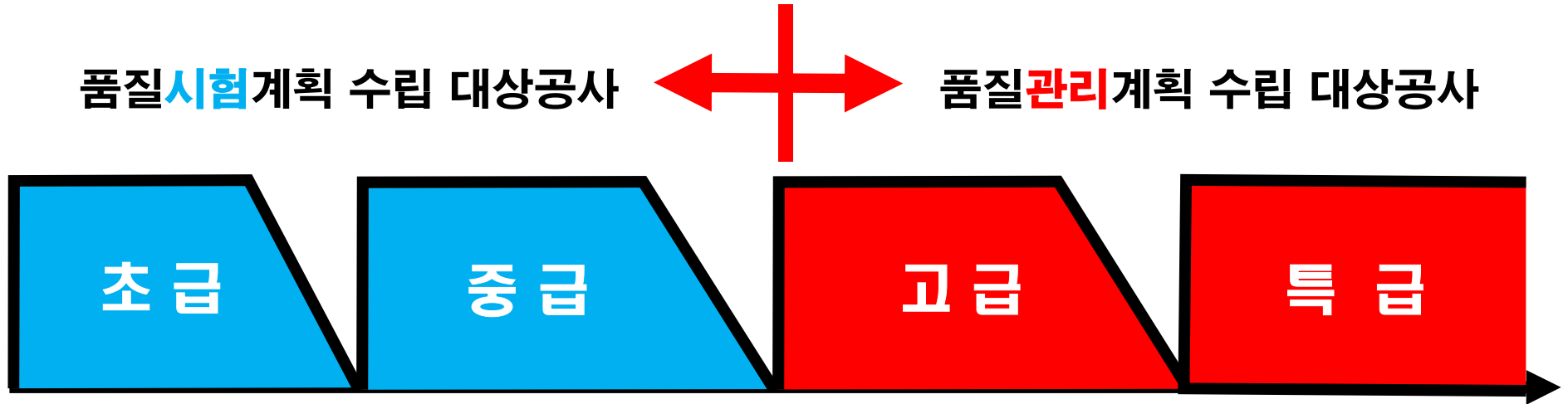
| 구분 | 공사규모 | 시험실 규모 | 건설기술인 |
|----|--|---------------------|----------------------|
| 특급 | 총공사비 1,000억원 이상 건설공사 연면적 5만m²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건설공사 | 50m ² 이상 | 특급 1명 이상 중급 2명 이상 |
| 고급 |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중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50m ² 이상 | 고급 1명 이상 중급 2명 이상 |
| 중급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연면적 5천m ²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건설공사 | 20m ² 이상 | 중급 1명 이상 초급 1명 이상 |
| 초급 |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 중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20m ² 이상 | 초급 1명 이상 |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도표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공사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



(종합) 5억원
(전문) 2억원

100억원

500억원

1,000억원

토 목

660 m²

5천 m²

3만 m²

5만 m²

건축

20 m² 이상

50 m² 이상

시험실

품질관리자의 업무

품질관리자의 업무

- 품질관리(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주요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여부 확인
- 현장 시험실 및 시험검사 장비의 관리
- 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 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 부적합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 관리

품질시험 및 검사

품질시험 및 검사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의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함(영 제91조)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품질검사 대행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 인정받은 재료

위반 시 제재사항

벌칙

-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 이행 또는 품질시험 · 검사를 하지 않은 자
-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건설자재 · 부재를 공급 또는 사용한 자
- 반품된 레미콘에 대해 품질인증을 받지 않고 사용한 자

시정명령

- 품질관리(시험)계획 및 품질시험 검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품질관리비 미계상(일부 미계상 포함) 또는 목적 외 사용

1. 현장점검 공사중지 명령 요건 개선

구조물 안전 지장

안전 및 환경 관련
위험 예견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 미시행

품질관리(시험)계획
미수립 · 미시행

품질관리 관련 국토교통부 주요 추진사항

2. 적정 품질관리비 확보

품질관리비에 대한 낙찰률 적용 배제

3. 턴키공사 품질평가 강화

턴키공사 평가 시 품질평가 항목 신설

*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현장내 품질관리체계 구축 적정성 등

품질관리 관련 국토교통부 주요 추진사항

4. 품질관리자 관련 사항

품질관리자의 겸직 금지 규정 신설(별첨부과 항목 포함)
품질관리 책임자급 현장채용 제한(입찰조건에 명기)

5. 가설구조물 안전성 검토비용 이행력 강화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인 비용



안전관리비에서
집행

품질관리 관련 국토교통부 주요 추진사항

6. 가시설구조물 안전성 확인대상 확대

〈기존〉

1. 높이 31m 이상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m 이상 거푸집 동바리
3. 터널 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추가〉

5. 브라켓 비계
6. 10m이상에서 외부작업 위해 설치하는 작업 발판 및 안전시설물 일체화한 가설구조물
7. 현장에서 제작·조립·설치하는 복합 가설구조물

감사합니다